#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80

발의연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이정문・문진석・오영환

박성준 • 황운하 • 신동근

민형배 · 김철민 · 송갑석

한준호 · 김원이 · 김윤덕

기동민 · 김상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과 관련된 거래조건임에도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되어 있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행사 진행과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6등).

#### 법률 제 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의 제목 중 "집행"을 "사전 동의 및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를 "제1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및 사전 동의 절차와 제2항"으로 한다.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비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이미 수령한 가맹금 등 일체의 금원(金員)을 재원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 우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의6제1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6제1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6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1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사전 동 의를 받지 아니한 자
- 8.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u>집</u>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u>사</u>
<u>행</u> 내역 통보 등) <u>&lt;신 설&gt;</u>	전 동의 및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
	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
	와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1
	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
	업자단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동의
	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
	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
	<u> </u>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이미 수령
	한 가맹금 등 일체의 금원
	(金員)을 재원으로 광고나 판
	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저 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 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저

$\underline{2}$ (현행 제 $1$ 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및 사전 동의 절차와 제2
<u> </u>
세33조(시정조치) ①
제12조
의6제1항·제2항
②·③ (현행과 같음)
세35조(과징금) ①

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 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 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 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 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 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 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 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 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 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저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제12조의
<u>6제1항·제2항</u>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ul><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li>(金元)</li></ul>
<b></b>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신 설>

⑦·⑧ (생 략)

-----.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1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와 관련 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 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 지 아니한 자
- 8.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 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가 맹점사업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⑦·⑧ (현행과 같음)